〈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제이엔터스튜디오

정보공개서

제이엔터스튜디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제이엔터스튜디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B동 405호(SK리더스뷰)

대표전화번호: 010-9511-4499 대표팩스번호: 0504-033-0275

가맹사업 담당 전화번호: 010-9511-4499

| I. | 가맹본부의 | 일반 현황4 |
|-------|--------|--------------------------|
| п. | 가맹본부의 | 가맹사업 현황7 |
| Ш. | 가맹본부와 |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1 |
| IV. | 가맹점사업 | 자의 부담 12 |
| ٧. | 영업활동에 | 대한 조건 및 제한 17 |
| VI. | 가맹사업의 |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27 |
| VII. | 가맹본부의 |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29 |
| VIII. | 교육・훈련(| 에 대한 설명32 |
| IX. | 가맹본부의 | 직영점 현황 (신설)33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 | 지 | 주 소 | | | | | |
|--------------|--------|------------|---------------------------|-----|----------------------------|-------------|---------------|--|
| | 제이엔터스 | 튜디오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B동 405호 | | | | | |
| 제이엔터 스튜디오 | 법인 설립 | 법인 설립등기일 | | 대표자 | 대표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 | |
| | 2024.6 | 2024.6.14. | | 한재우 | 한재우 010-9511-4499 0504-033 | | 0504-033-0275 | |
| . ,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8973376 사업자등록 | | 루번호 | 748- | -86-03608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제이엔터스튜디오]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 |
|-----------|--------------------------------------|-------------------------------|--|--|--|--|
| 명 칭 | 제이엔터스튜디오 | 엔터테이너가 되는 공간대여 | | | | |
| 상 호 | 제이엔터스튜디오 OO점 |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다 니다. | | | | |
| 상표(서비스표) | JE 제이엔터 스튜디오 Jenter studio | 서비스표 등록번호: 등록중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Œ | 상표의 로고부분만 표기합니다.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0 | 0 | 0 | 0 | 0 | 0 |
| 2022년 | 0 | 0 | 0 | 0 | 0 | 0 |
| 2023년 | 0 | 0 | 0 | 2,637 | 2,637 | 2,637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 사업경력 | | |
|---------------|-----------|--------|------------------|------------------------|----------|--|
| 11177 | 미묘 | 2 71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 | 한재우 | 대표이사 | 2022.3. ~ 현재 | 제이엔터스튜디오 대표이사 | 회사 업무 총괄 |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الداد الد | 권지예 이사 | 2019.10.~2022.7.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 법인세 세무조사 | |
| | · 건/] 에 | | 2022.7.~2024.5.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준법지원실 | 계약검토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상근 | 수(명) 비상근 | 직원수(명) | | |
|---------------|-----------------------|-------------|--------|--|--|
| 2023년 12월 31일 | 1 | 0 | 0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③) |
|-----------------------|------|---------------------|-----------------------------|----------------|----------------------------------------------|
| 제이엔터스튜 디오 (상표권) | _ | 2024.6.27. 출원 | 출원번호 41202451927 9387 | - | -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п. 가맹본부의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사업 현황

1. [제이엔터스튜디오]를 시작한 날: 2024년 7월 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3년 10월 10일)

2. [제이엔터스튜디오]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제이엔터 | 제이엔터 | 장, 게 O | 2024.7.1. ~ 현재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164, |
| 스튜디오 | 스튜디오 | 한재우 | 2024.7.1.~ 연재 | B동 405호(SK리더스뷰) |

3. [제이엔터스튜디오]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
| 제이엔터스튜디오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
| 에 에 앤 너스 ㅠ 너 오 - | 기타 서비스 | 공간대여 | | |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 | 2021.12.3 | 1. | 2 | 2022.12.31. | | | 2023.12.31. |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 전체 | _ | _ | - | 1 | _ | 1 | 1 | _ | 1 | |
| 서울 | _ | _ | _ | 1 | _ | 1 | 1 | _ | 1 | |
| 부산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대구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인천 | - | _ | _ | _ | _ | _ | - | _ | _ | |
| 광주 | - | _ | - | - | _ | _ | - | _ | _ | |
| 대전 | - | _ | _ | _ | _ | _ | _ | _ | | |
| 울산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세종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경기 | - | _ | - | _ | _ | _ | _ | _ | _ | |
| 강원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충북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충남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전북 | - | _ | ı | _ | _ | _ | - | _ | _ | |
| 전남 | - | _ | _ | _ | _ | _ | _ | _ | _ | |
| 경북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경남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제주 | _ | _ | _ | - | _ | _ | _ | _ | _ | |

5. 바로 전 3년간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_ | _ | _ | _ | _ | _ |
| 2022 | _ | _ | _ | _ | _ | _ |
| 2023 | _ | _ | _ | _ | _ | _ |

6. [제이엔터스튜디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제이엔터스튜디오]외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개)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 정기준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 2023년 말 가맹점수 | 20 | 23년 가맹 | 점사업자의 | 연간 평균 | 7 매출액 | | |
|----|--------------------|--------------|---------------------------|----------------------|---------------------------|------------------|------------------------------|----|
| 지역 | | |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비고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 ² 당 | 상한 | 면적 3.3m ² 당 | 하한 | 면적 3.3m ² 당 | |
| 전체 | _ | 해당없음 | | | | | | |
| 서울 | _ | 해당없음 | | | | | | |
| 부산 | _ | 해당없음 | | | | | | |
| 대구 | _ | 해당없음 | | | | | | |
| 인천 | _ | 해당없음 | | | | | | |
| 광주 | _ | 해당없음 | | | | | | |
| 대전 | _ | 해당없음 | | | | | | |
| 울산 | _ | 해당없음 | | | | | | |
| 세종 | _ | 해당없음 | | | | | | |
| 경기 | _ | 해당없음 | | | | | | |
| 강원 | _ | 해당없음 | | | | | | |
| 충북 | _ | 해당없음 | | | | | | |

| 충남 | - | 해당없음 | | | |
|----|---|------|--|--|--|
| 전북 | _ | 해당없음 | | | |
| 전남 | _ | 해당없음 | | | |
| 경북 | _ | 해당없음 | | | |
| 경남 | _ | 해당없음 | | | |
| 제주 | _ | 해당없음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과세분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제이엔터스튜디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0 |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제이엔터스튜디오]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총계 | [5,500] | | |
| 가맹금 | 5,500 | | -가입비(가맹비의 10%) -오픈 전 개점 교육비(가맹비의 50%) -브랜드사용료(가맹비의 30%) -영업권보장료(가맹비의 10%)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 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 개월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 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 2)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가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가입해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대체되는 예치가맹금 액수는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5,500 |
| 가맹비 | 5,500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쪽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99m ² 당 금액 | 면적 3.3㎡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총계 | | [11,000~ 14,300] | 367~477 | |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 인테리어 (전기조명,바닥) | 협력업체 | 11,000~ 14,300 | 367~477 | 공사시작 1일 전 | 공사 전 계약취소 | _ |
| 별도금액 |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등 | 소방설비, 요 | 막이, 거울, 퍼 비장, 전기증설 화개설, 음향설 | , 전화기, 인터 | 터넷, 컴퓨터,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 입점상권 또는 지역 등에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 표 항목은 귀하가 직접 설치/구매할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점포 내/외장공사를 직접 시공할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3.3m²당 (44,000원, VAT 포함)의 설계비와, 감리비를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가맹희망자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최종 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계약 기준 | 교육・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시 | 특별한 기준 없음 |
| 종업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로열티 | 가맹본부 | 월 165,000원 | 다음 월 1일 | 시스템의 사용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월 2%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_ | 월 로열티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해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

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 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제이엔터스튜디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이 경우 당사에 가맹비(550만원, VAT포함)을 납입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제이엔터스튜디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제이엔터스튜디오]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 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품 ·용역은 없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품· 용역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 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 등일만 집중 함기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 댄스연습실 | 제이엔터스튜디오 | 해당없음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
| 특수상권인 경우 특수상권 내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상권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직선거리 500M (단, 특수상권은 제외)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제이엔터스튜디오]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 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0% | 10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 2023 100% | | 0%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 |

| 예→B, 아니오→D |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 계약조문 |
|---------------------------------------------------------------------------------------------------------|-----------------|---------|
|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로열티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 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 |
|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제95. | 조 제1항 |
| ○ [제이엔터스튜디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u>2</u> 0. | T 711 8 |
|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 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영업 및 주요 자 산을 양도한 경우 | |
|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가맹점의 경영의 전반적· 실질적인 부분에 관여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제26조 제1항 |
| ○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한 경우 | ,,23== ,,13 |
| ○ 가맹사업자가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별도 약정 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 |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 조 제2항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 | |
|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예. 성범죄, 재산범죄, 폭행, 협박, 마약, 도박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 |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당구인이 당사가 정반 -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 스하 거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양수인, 가맹본부의 신규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ലേ∧ിം ലാറി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원할 경우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시 | 모든 권리의무 | 3개월 이내 통지 | _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서면으로 통지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시 가능 | - | 서면으로 통지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제이엔터스튜디오]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금지 구역 | 비고 |
|------------|-----------|----|
| ○ 댄스연습실 | ○ 국내 전 지역 |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제이엔터스튜디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일 24시간 | 365일 연중 무휴 영업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가맹사업자 자율 | 직접 근무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제이엔터스튜디오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7.14 | 광고 | | | 보다 저귀 | 비고 |
|-------------|-----------------------|-------------|----------------|-------------------------------------------------------------------------|---------------------------------------------------------------------------------|
| 구분 | 성격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분담 절차 | 山北 |
| | 상품광고 | 없음 | 전액 부담 | 과 그 제 청 코크 . 카메코시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 광고비의 75% | 광고비 25%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가맹점 로열티로 부담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 할인행사 | 없음 | 전액 부담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 로열티로 부담 |
| 판촉행사 | 기타행사 | 없음 | 전액 부담 | n | 가맹점 로열티로 부담 |
| | 팜플렛 등 제작 | 없음 | 전액 부담 | n | n |
| | 기타 개별행사 | 행사에 대 | 라라 유동 적 | n | n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가맹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SNS 등)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도가 있을 경우 귀하는 최대한 협조하여 판촉활동을 진행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판촉활동을 위한 팜플렛, 카달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제이엔 터스튜디오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당사가 해당 판촉활동이 브랜드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는 판촉활동의 내용 변경 및 중단 등 당사의 요청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하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와 영업노하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제공한 각종 정보 및 자료와 영업노하우, 기타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합니다)를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내용에 따른 의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 상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57일 내외 | [12p~13p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홈페이지, 전화, 방문 |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사업 설명·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7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1 |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가맹금 수령(보증보험) | 1 |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2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1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30 |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1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개선 사유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사유 | 비고 |
|--------------------------------------------------------------------------------|------------------------------------------------------------|-----------------------------------------|--------------------------------------------------------------|----------------------------------------------------------------------------------------------------------------------------------------------------------------|----|
| ○점포의 인테리후 정비, 등의 객인 등의 객인 등의 객인 이 보관정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 용 ○ 인테용(장교체의 한 시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는 점포환경 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 90일 이내에 가맹 | 이내에 가맹 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경우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잔여 기간에 부담액 이 나하지 하는 지급하지 아미 지급한 경우에는 행우에는 행우에는 행우에는 항의 기가 하는 기가 있다. | |

| -1 00 ±1 11 11 | |
|----------------|--|
| 터 90일 이내 | |
| 에 가맹본부 | |
| 부담액을 지 | |
| 급 | |
| <분할지급 시 | |
| 절차> | |
| ○가맹점사업자 | |
| 의 비용 청구 | |
| (공사계약서 | |
| 등 공사비용 | |
| 을 증빙할 수 | |
| 있는 서류 첨 | |
| 부) → 3차에 | |
| 걸쳐 가맹본 | |
| 부 부담액을 | |
| 분할 지급 | |
| (1차 : 청구일 | |
| 로부터 90일 | |
| 이내, 총 부담 | |
| 액의 30%, 2 | |
| 차 : 1차 지 | |
| 급일로부터 | |
| 60일 이내, | |
| 총 부담액의 | |
| 30%, 3차 : | |
| 2차 지급일로 | |
| 부터 60일 이 | |
| 내, 총 부담액 | |
| | |
| 의 40%)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 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 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 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 (단, 개선에 소요되는 | -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제이엔터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
| 신규 교육 | 서비스 제공방법 및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 강의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필수 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제이엔터스튜디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1일 | 최초 가맹금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 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서울 | 노원스페셜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62-47 지층 |

[상기 직영점은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1년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2,637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을 근거로 기재한 것입니다.] |